

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23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수입 증가와 지출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수입·지출 계획이 변경됨.
- 나.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수입이 당초 48,117백만원에서 57,892백만원으로 9,775백만원 증가함.
- 나.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(공공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시범사업 외 3건)을 위해 정책사업비(기후변화대응강화)를 14,204백만원 증액반영함.
- 다. 이에따라 정책사업비(기후변화대응강화)는 14,402백만원에서 14,204백만원 증액하여 28,606백만원으로,
예치금은 46,339백만원에서 4,429백만원 감액하여 41,910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.

라. 수입계획 변경내용

○ 예치금회수 9,775백만원 증액

- (당초) 48,117백만원 → (변경) 57,892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< 수입 부문 >			
구 분	당 초 (A)	변경 (B)	증 감 (B-A)
계 (순수입)	60,746 (12,629)	70,521 (12,629)	9,775 (-)
융자금회수(이자포함)	8,507	8,507	-
예치금회수	48,117	57,892	9,775
이자수입	1,644	1,644	-
기타수입	2,477	2,477	-

마. 지출계획 변경내용

○ 정책사업비(기후변화대응강화) 14,204백만원 증액, 예치금 4,429백만원 감액

- 「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」 6,500백만원 증액

: (당초) 5,060백만원 → (변경) 11,560백만원

- 「공공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시범사업」 2,000백만원 신규편성

- 「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(2단계)」 4,040백만원 신규편성

- 「노원 열원시설 보수공사」 1,264백만원 신규편성

- 「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」 400백만원 신규편성

(단위: 백만원)

< 지출 부문 >							
구 분	당 초	1차 변경	2차 변경 (A)	3차 변경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C/A*100)	
계 (순지출)	60,746 (10,361)	60,746 (12,417)	60,746 (14,407)	70,521 (28,611)	9,775 (14,204)	16.1% (98.6%)	
정책사업비 (기후변화 대응강화)	계	10,356	12,412	14,402	28,606	14,204	98.6%
	비용자성 사업비	5,856	7,306	9,296	11,702	2,406	25.9%
	융자성 사업비	4,500	5,106	5,106	16,904	11,798	231.1%
행정운영경비	기본경비	5	5	5	-	0%	
재무활동	예치금	50,385	48,329	46,339	41,910	△4,429	△9.6%

※ 최종 의회 의결액(2차변경, 제306회 임시회)대비 정책사업비(기후변화대응강화) 20% 초과(98.6%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박승미 (☎ 2133-3517)